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1. 10 선고 2017가단1220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19. 9. 26 선고 2019나506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1. 10 선고 2017가단12206 판결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18. 11. 29

판결 선고 2019. 1. 10

주 문

【】ZC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D 답 2207㎡ 중 1/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997. 4. 1. 접수 제26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가.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은 원고와 E이 각 1/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.

나. E은 1996. 3. 31. F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B, 채권최고 액 3,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1997. 4. 1.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.

다. F은 1998. 11. 17. 피고에게 1998. 11. 16.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무렵인 1996. 3. 31.경 발생하였고,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1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6.3. 31.경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을 소유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채무자인 B가 2013. 4. 19.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00508근저당권말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B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아닌 경남 합천군 G 토지(이하 '별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시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,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.

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, 즉 피고가 E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, 별건토지에 관한 강제경매

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